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5304
----------	------

발의연월일 : 2017. 1. 26.

발의자 : 백혜련 · 안규백 · 최인호
박광온 · 우원식 · 황주홍
홍익표 · 권미혁 · 조웅천
박용진 · 정성호 · 이춘석
박범계 · 박경미 · 박남춘
박정의원(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비공무원이 작성하는 서류와 법원이 피고인을 소환하기 위하여 발부하는 소환장에는 기명날인(記名捺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형사소송 서류에 대한 본인확인 방법에 있어서 공무원이 아닌 자가 작성하는 서류를 공무원이 작성하는 서류와 달리 적용할 이유가 없고, 생활저변에 서명이 보편화되는 추세에 따라 행정기관에 제출되는 서류의 본인확인 표식으로 인장이나 지장뿐만 아니라 서명도 인정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또한 법원의 소환장 작성에 있어서도 서명의 방법을 추가함으로써 현행법상 본인확인 방법에 관한 규정을 통일성 있게 정비하고자 함.

이에 비공무원의 서류와 소환장의 본인확인 방법으로 기명날인 외

예 서명도 허용하려는 것임(안 제59조 및 제74조).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 전단 중 “記名捺印”을 “기명날인 또는 서명”으로 하고, 같은 조 후단을 삭제한다.

제74조 중 “記名捺印”을 “기명날인 또는 서명”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59조 및 제7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무원 아닌 사람이 이 법에 따라 서류를 작성하거나 법원이 피고인에게 소환장을 발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第59條(非公務員의 書類) 公務員 아닌 者가 作成하는 書類에는 年月日을 記載하고 <u>記名捺印</u>하 여야 한다. <u>印章이 없으면 指章</u> <u>으로 한다.</u></p>	<p>第59條(非公務員의 書類) ----- ----- ----- <u>기명날인</u> <u>또는 서명</u>-----. <후단 <u>삭제></u></p>
<p>第74條(召喚狀의 方式) 召喚狀에 는 被告人의 姓名, 住居, 罪名, 出席日時 및 場所와 正當한 理 由없이 出席하지 아니하는 때 에는 逃亡할 念慮가 있다고 認 定하여 拘束令狀을 發付할 수 있음을 記載하고 裁判長 또는 受命法官이 <u>記名捺印</u>하여야 한 다.</p>	<p>第74條(召喚狀의 方式) ----- ----- <u>기명날인 또는 서명</u> -----.</p>